

외국환거래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외국환거래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를 행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외국환거래 사항인지, 나아가 법령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곤 한다. 문제는 외국환거래 위반이 발생되고 나서 위반임을 인식하는 경우다.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는 중요 관심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체적 제한사항은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거래규정만으로 일반인들이 해석하여 외국환거래 신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환거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외국환거래에 대해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특히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주자, 비거주자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외국환거래 규정이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조합은 모두 외국환거래 규정을 확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위 법 조항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민 i)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ii)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iii)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i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iii)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i)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ii)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v)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역 및 별금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행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외국환거래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법무법인 바른



GS홈쇼핑, ‘두날개 프로젝트’에 1.4억 후원금 GS홈쇼핑은 지난 11일 영등포구 문래동 본사에서 영상·미디어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두날개 프로젝트’에 후원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 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해 올해 1월 모집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최종 선정된 4개팀을 발표했으며, 이들은 이후 본격적인 영상제작에 돌입하게 된다.

/GS홈쇼핑



금호타이어 임직원, 중증장애인과 사회체험 활동 금호타이어는 지난 11일 임직원들이 중증장애인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문화예술체험 전시공간을 찾아 사회체험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은 평소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과 르느와르, 반고흐, 고갱 등 19세기 이상 주제의 화가들의 명화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함께 영화 관람을 했다.

/금호타이어



제주항공, 임직원에 아이스크림 무제한 제공 제주항공이 올 여름에도 직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무제한 제공한다. 12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무더위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정비본부, 객실라운지, 공항 현장 등 곳곳에 대형냉장고를 설치하고 오는 8월말까지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주항공

공적연금 가입해야 좋을까?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간혹 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재원이 문제가 된다는 시중의 뉴스에 영향을 받아 민영보험회사나 은행, 증권사들 통해 사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히 개인적인 성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결론은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성 연금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적으면 연금지급율이 낮아지고 운용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지급율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서 지급을 할 것 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공적연금을 먼저 가입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이후 추가적인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노후에 대비하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것

이 고객의 현재와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정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때 절세효과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무계산기 영역이다. 재무계산기는 별도로 다루지 않지만 원리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보통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금액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52만원을 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때 400만원을 납입해서 52만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34만원의 돈을 납입하고 52만원의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리원 운영기획관 박덕수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 김장호 ◇ 국장급 전보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성기석 ◇ 과장급 전보 △ 행정한류담당관 고옹조 △ 전자정부정책과장 이세영 △ 지역공동체과장 명창환 △ 주소정책과장 김정훈 △ 재정정책과장 김성기 △ 회계제도과장 김종범 △ 지방세정책과장 김영빈 △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정훈 △ 환경원자력협업담당관 박현용 △ 재난대응훈련과장 박용중 △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장 박후근 △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장 김형국 △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강광혁 △ 이북5도 황해도 사무국장 이길영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김석현

◆ 고려대 △ 공과대학장 겸 공학대학원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겸 테크노콤�1렉스원장 김종훈 ◆ 전북대학교병원 △ 진료처장 김정렬 △ 치과진

부제

- ▲ 이운진씨 별세, 최재을(메트라이프 전무)씨 모친상 = 12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4일 02-2258-5940
- ▲ 이시희씨 별세, 이성선(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씨 부친상 = 11일 오후, 충남 보령시 웅천장례식장 2번소, 발인 13일 오전 8시. 041-931-4447
- ▲ 이동씨 별세, 임대근(현대해상 부장)씨 모친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02-2227-7500



2018 중앙언론동문상
이종훈·함철 등 선정

중앙대 언론동문회(회장 임광기, SBS 논설위원)는 지난 11일 중앙대에서 총회를 열고 이종훈 동아일보 뉴스센터일본부장, 함철 KBS 선거방송기획단장, 노효동 연합뉴스 국제뉴스 1부장을 ‘2018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특별상은 김광성 한화 에스테이트 대표가 수상자로 뽑혔다.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매년 언론문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동문 언론인을 선정해 중앙언론동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인사

◆ 행정안전부 ◇ 국장급 승진 △ 국가정보자원관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편집인 인쇄인 광고문의 독자센터 일간 메트로 일간 메트로경제	이장규 김교준 02)721-9851,9826 02)721-9861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97호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91호